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86호 2012. 4. 10.(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를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료관의 장”을 “박물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을 “녹청자 박물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4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제19조 중 “사료관”을 각각 “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사무명란 중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하며,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인”을 “녹청자 박물관장인”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위원장인”을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장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을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양정감경기준”을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하고,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양정감경기준”을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중한”을 “무거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로 하고,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을 “별표 4와 별표 1의2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6. 청렴의무 위반란과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의2를 별표 4로 하고,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